

2021년도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8. 31.(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39건(안전번호 제2021-114056호~11499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114056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14057~114059호는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5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제2021-11405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D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제2021-1140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14057~11405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와 ●●●●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D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4057~11405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14060호~11499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올드가드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14236호 ‘(영화)올드가드 (2020)’는 2020. 7. 10.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520포인트에 배포중임.
(방송 ‘[중점](방송)프리즌 브레이크 리턴즈(201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14855호 ‘[중점](방송)프리즌 브레이크 리턴즈(2017)’는 2017. 4. 4. ~ 2017. 5. 30. 방영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60포인트에 판매중임.
(방송 ‘[중점](방송)월간 집(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14954호 ‘[중점](방송)월간 집(2021)’은 2021. 6. 16. ~ 2021. 8. 5. 방영한 국내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7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458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05639호~10765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C, D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4060호~11499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14056호, 제2021-114057~114059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14060호~114994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7.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